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
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E
(SEOUL OFFICE)

조정 신청서 전송문 표지 (Complaint Transmittal Coversheet)

본 첨부 서류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1999년 10월 24일 채택한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에 의거한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의 서울사무소에 귀하(사)를 상대로 접수된 조정 신청서입니다.

본 규정은 귀하(사)가 도메인이름을 등록했던 등록기관과의 등록약관에도 적용되므로, 귀하(사)가 이미 등록한 도메인이름에 대해 제 3자(조정 신청인)가 조정 신청서를 ADNDRC 같은 분쟁 조정 서비스 기관에 제출한 이상, 귀하(사)도 동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행정절차에 자료를 제출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귀하(사)는 본 표지 문서에 첨부된 서류에서 조정 신청인의 성명과 자세한 연락처 그리고 조정 신청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귀하(사)가 반드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서울 사무소가 조정 신청서를 검토하여 상기 규정과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규정의 절차규칙(이하 "절차규칙"이라 함) 그리고 이에 관한 ADNDRC의 보충 규칙(이하 "보충 규칙"이라 함)에서 요구하는 공식 요건을 만족한다고 판단되고 조정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수령하면, 서울 사무소가 절차 개시 통지서를 통해 공식적인 조정 신청서 사본을 송부할 것입니다. 귀하는 그 때 규정, 절차규칙과 보충 규칙에 따라 조정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20일 이내에 서울사무소와 조정 신청인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가 원할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행정절차를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 ICANN 규정 문서: <http://www.icann.org/udrp/udrp-policy-24oct99.htm>
- ICANN 규칙 문서: <http://www.icann.org/udrp/udrp-rules-24oct99.htm>
- ADNDRC 보충 규칙과 도메인이름 분쟁 관련 기타 정보: <http://www.adndrc.org>

혹은 ADNDRC의 서울사무소에 연락하면 상기 서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연락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82-2) 2186-4564
팩스: (82-2) 2186-4494
Email: kidrc@adndrc.org

(a) 공식적인 조정 신청서와 (b) 행정절차와 관련된 기타 통신문을 수령할 귀하의 자세한 연락처를 통지하려면, ADNDRC의 서울사무소로 연락 바랍니다.

본 통지서 사본은 조정 신청 대상인 도메인이름이 등록된 기관에도 발송되었습니다.

신청인은 본 조정 신청서를 ADNDRC에 제출함으로써, 규정, 절차규칙 및 보충 규칙을 준수하며 이와 관련된 의무를 다할 것을 동의합니다.